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25호 2016. 2. 24. (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6 - 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거창군 고시 제2016 - 20호 거창군계획시설(도로:소로2-61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3

거창군 고시 제2016 - 21호 도로명주소 고시 5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6 - 196호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

회 담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 고시 제2016 - 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2월 18일

거 창 군 수

신 청 인	거창군수 (건설과장)	주 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하 천 명 (하천등급)	황강(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학리 407-10번지 외 15필지	
	면 적	9,816㎡	
	점용기간	2016년 02월 18일부터 ~ 2016년 06월 30일	
	목적 및 사유	재해예방을 위한 하도준설 및 성토재 활용	

거창군 고시 제2016 - 20호

거창군계획시설(도로:소로2-61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71-383호(1971.6.26)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61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6. 2. 22.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종점		
교통 시설 (도로)	송정리(소로2-61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	송정	소로	2	61	65	8	536	거창읍 송정리 1063	거창읍 송정리 249-21	건고383호 (‘71.6.26)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17. 12. 31.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5,862	536					
1	거창읍 송정리	1063	도	1,580	21	-	국(건설부)			
2	"	245	답	331	2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59	이재우			
3	"	246	전	423	207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82-1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10길 7-2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67 102동 2903호	이영숙 김화영 김연우			
4	"	1061-15	구	1,308	45	-	국(농림수산부)			
5	"	249-24	답	206	163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82-1	이영숙			
6	"	249-13	답	331	57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93-1	박영섭			
7	"	249-21	도	1683	41	-	거창군			

거창군 고시 제2016 - 2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24.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14-5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74-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14-5	2009-12-28	2016-02-24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면) 활용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407-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471-146	2009-04-01	2016-02-24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671-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325	2009-12-28	2016-02-24	서쪽 산수리 골짜기와 나란히 짝을 이루므로 붙여진 행정구역 병곡리를 반영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761-29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076-23	2009-07-02	2016-02-24	지명(덕유산+월성계곡) 활용	
5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88-46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413-5	2009-07-02	2016-02-24	거창군 거창읍과 함양군 안의면을 연결하는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452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한산2길 43	2009-04-01	2016-02-24	마을이 산을 지고 북향으로 자리잡고 있어 겨울에 눈이 오래까지 녹지 않아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97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1길 7-19	2009-04-01	2016-02-24	마을내에 무릉도원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832-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2길 107	2009-04-01	2016-02-24	행정구역명 석강을 이용하여 붙여진 두번째 도로	
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75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048-23	2009-12-28	2016-02-24	거창군 가조면과 함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7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2. 개정이유

- 군 발주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 공사시행의 통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
 - (현행) 군수는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신설) 읍·면장은 통보받은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불필요한 서류제출 조항 삭제함(안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4. 입법예고기간 : 2016. 2 . 17. ~ 2016. 3 . 8.(20일간)

5.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건설과 **【☎055-940-3533, Fax055-940-3529 또는 메일 ghdwo85@korea.kr】**
-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건설과 건설담당 **【☎055-940-353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

제출일자	2016. . .
제 출 자	건설과장

1. 제안이유

- 군 발주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나. 공사시행의 통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

(현행) 군수는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설) 읍면장은 통보받은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 불필요한 서류제출 조항 삭제함(안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2014.5.23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사항: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6.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분석 및 반영여부 기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감독”이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통보받은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2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수행 사항을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6조(공사시행의 통보) 군수는 제3조에 해당되는 공사의 착공계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계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u>통보하여야 한다.</u></p> <p>제5조(부실공사 근절서약서) 군수는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p>	<p>제2조(정의) ----- -----</p> <p>1.“공사감독”이란 <u>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공사시행의 통보) ----- ----- ----- -----<u>통보</u> <u>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통보받은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u></p> <p><삭제></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2013.5.22.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9. "검측감리(檢測監理)"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設計圖書)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공감리"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2. "감리원(監理員)"이란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2014.5.23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바. (생략)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

2.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검토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5.19.] [대통령령 제26894호, 2016.1.12., 일부개정]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별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별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별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별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별점관리기준에 따른다.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2.>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인·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발주청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

1.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